

『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1979년에 준공된 비둘기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전반적인 보수·보강등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교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신축 부지 매입(7,000m²)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 되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임
-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지상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☐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

- 토 지 : 9,855m²
- 기준가격 : 3,260,000천원(분양가 기준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
○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계획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
- 구미시 선산읍 교리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9,855m² (분양가 기준 3,260,000천원)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비둘기아파트 신축부지 매입(7,000m²)에 대해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 되었으나,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당초 부지면적 7,000m²에서 9,855m² (당초대비 2,855m²증가)로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음
- 다만, 지하주차장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지상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추가매입 사유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